

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체납분 압류 통지
공시송달 공고

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2조 6항, 같은법 제99조제3호 규정에 의거 부과한 과태료의 체납사항에 대하여 「지방세 징수법」 제51조 및 「지방행정재제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압류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(송달)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4. 8. 8.

인천광역시서구청장

- 공고기간 : 2024. 8. 8. ~ 2024. 8. 23.
- 공고방법 :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
- 공고내용

체 납 자	상 호	이룸토건(주)		
	주 소	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 ***, ***호 (가정동, 대건프라자)		
압류재산의 표 시 (자동차)		***소****	압류일	2024. 07. 09.